

의안번호	제223호
의결연월일	2023.12.01.

-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1.
- 상 정 일 자 : 2023. 12. 01.

제296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건설교통과장 : 정재현]

가. 제안이유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제2항 개정·시행 (2022. 1. 8)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이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 의무화(안 제18조)
 - (현행)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
 - ⇒ (개정)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
-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(안 제4조, 제6조, 제11조, 제12조, 제16조, 제1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범진)

- 본 조례안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함으로,
-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생략

5. 토론 요지

- 없음

6. 심사 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